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79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최호정, 강석주, 김규남,
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
김용호, 김원태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김혜지,
남궁역, 문성호, 서상열,
송경택, 유만희, 윤종복,
이봉준, 이성배, 이은림,
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,
황철규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대형 땅 꺼짐(싱크홀)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도시안전 및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-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도시 안전을 포함하도록 하여 서울시가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 및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토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고 나아가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.
-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기초조사 항목에 재해 영향 항목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단계에서 서울시에 영향을 주는 재해 관련 데이터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도시기본계획을 포함, 관련 정책 수립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.
- 지하안전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도시재해 영향에 대한 검토 및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내용에 도시안전을 추가함 (안 제2조 제1항)
- 나. 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재해영향을 추가함 (안 제4조제4항)
- 다.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지하안전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(안 제55조제3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·계획·관리”를 “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, 도시안전, 도시계획, 도시관리”로 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도시생태현황”을 “재해영향 및 도시생태현황”으로 한다.

제55조제3항제3호 중 “토지이용·건축·주택·경관·교통·환경·방재·문화·정보통신·도시설계·조경”을 “토지이용·건축·주택·경관·교통·환경·방재·문화·정보통신·도시설계·조경·지하안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)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“라 한다)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<u>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·계획·관리</u>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.	제2조(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환</u> <u>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</u> <u>성장, 도시안전, 도시계획, 도시</u> <u>관리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도시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③ (생략)	제4조(도시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<u>도시생태현황</u>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<u>재해영향 및 도시생태</u> <u>현황</u> -----.
⑤ ~ ⑦ (생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제55조(구성 및 운영) ①·② (생략)	제55조(구성 및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“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	③ ----- ----- ----- -----

축한다.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3. 토지이용 · 건축 · 주택 · 경관
· 교통 · 환경 · 방재 · 문화 ·
정보통신 · 도시설계 · 조경
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식견
과 경험이 있는 자 17명 이상
21명 이하

④ ~ ⑪ (생략)

-----,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토지이용 · 건축 · 주택 · 경관
· 교통 · 환경 · 방재 · 문화 ·
정보통신 · 도시설계 · 조경 ·
지하안전 -----

④ ~ ⑪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3조제항의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내용에 도시안전을 추가하여 서울시가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 및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
- 제4조제4항의 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재해영향을 추가하여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단계에서 서울시에 영향을 주는 재해 관련 데이터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,
- 제55조제3항제3호의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지하안전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해 영향에 대한 검토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임
- 검토결과, 도시안전 및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